구분	질의내용	한국환경공단 답변
<포장검사 및 재포장 금지 제도>		
1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를 폐기, 신규 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원 절약 측면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존 재고 소진 후 신규 부자재로 변경하는 것은 안되나요?	법적 포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적발이 되었을 때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 포장검사를 의뢰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24년 4월부터는 수송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이 적용되고 포장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포장정보 공개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으므로 포장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 또는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관리하며 제도 이행에 대해 준비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2	종합제품에대한 포장 규정에 대한 설명 필요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최소판매단위 라는 개념입니다. 만약 제품이 2개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각각 1개 씩만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은 단위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위제품이 2개 이상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종합제품으로 구분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단위제품일때는 포장공간비율이 10% 이하여야 하고 종합제품인 경우 25% 이하로 종합제품일 때 좀 더 공간에 여유가 있는 제품군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군은 검사의뢰할때 종합제품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구성품이 별도로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3	단위포장, 종합제품의 구분에 대한 부연 설명 (고시된 내용으로 이해의 한계)	
4	포장검사 명령은 연 몇회정도 진행되나요? 한제품이 위반이면 출시된 제품 적발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같은 제품이면 그다음부터는 미처분인가요?	포장검사 명령은 지자체에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진행됩니다. 과대포장 점검 주체는 지자체 이기때문에 공단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소 설명절, 추석명절등 선물세트등의 유통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제품은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제조 수입한 제품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주체인 지자체와 법률해석을 주관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5	포장규칙 별표1에 비고 11번을 보면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윈한 포장"의 공간비율과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해당 포장은 택배 포장을 가리키는 게 맞을까요? 택배 포장의 재질(종이박스, 비닐 필름 파우치) 이나 방법, 크기 등과 관계없이 전 포장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포장규직 별표 1 비고 11번은 '24년 4월 30일 부터 시행예정인 제품포장규칙 내용으로 현재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송포장이란 택배포장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송목적의 포장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에서 마련중이며 현재 정해져 있는 내용은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택비 포장의 재질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6	동일 포장에 동일 용량의 제품인데 향이 달라 제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지자체에서 포장검사명령을 받았을 때 다른 제품으로 보고 향마다 시험을 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다른 향으로 검사한 성적서가 있다면 동일 제품으로 보고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측정방법 별표2 1-1 가의 내용으로 향이나 맛이 달라서 제품명이 달라지는 경우 제품명이 달라지므로 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장검사 명령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다른 향으로 검사한 성적서로 인정가능한 지 여부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과대포장사례 사진 중 앰플 사진 경우 ,예를 들어 단위제품 5g *10개 인 경우 총 중량 50g 이면 포장공간비율 산출방법 적용 안함으로 되는 건지, 과대포장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판매가 되는 단위제품 1개의 내용물이 5g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단위제품 화장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산출예외대상에서 총중량 조건(포장무게 포함 총중량 50g이하)을 확인하지 않으니 5g의 단위제품은 내용물 30g이하이기 때문에 포장공간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단위제품이 10개가 모인 종합제품인 경우에는 50g이 넘기 때문에 포장공간비율의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8	단품으로 포장 했었는데 재고가 있어서 세트사양으로 변경할 경우 불법인가요?	상황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단품에서 다른 재고가 있는 제품을 추가하여 종합제품으로 구성하셨다는 상황인지요. 동일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각각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묶어서 세트로 구성하셨다면 종합제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종합제품이 되기 위해서 동일한 제품을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설명과 제품 사진이 있는 경우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	비누 3종류를 각각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 (비누 1차 비닐 포장 +종이 단상자 2차 포장) ->> 세트 구성하여 판매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개별적으로 팔지 않아야 세트로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비누 3종류가 각각 단위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라면 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품 각각이 개별적으로 판매되어야 세트(종합제품)로 인정가능합니다.
10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기준은 바코드 여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매장에 진열되어있어야하나요?	1. 과대포장과 관련질문이라면 : 단위제품으로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기준을 문의하신 거라면 실제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다고 해도 단위제품으로 인정가능합니다.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이라면 : 제품이 출고되는 포장형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수입완제품은 포장검사제도 적용하나요? 감사합니다.	수입제품도 포장방법 준수댓항 제품인 단위제품(7개 제품군) 및 해당제품군의 종합제품에 해당된다면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해당제품군은 제품포장규칙 제4조 2항 관련으로 [제품포장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참고로 비누 3종류가 단품으로도 수입, 3종 묶여있는 세트로도 수입합니다. 3종 묶였잇는 세트 그대로를 수입하는 것인데도 안되는 것일까요?	문의하시는 사항이 재포장에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인지요? 수입단계에서 3종 묶여있는 세트제품을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류로 포장했다면 재포장에 해당됩니다
13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휘한 목적의 제품포장= 택배포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14	포장공간 비율에 대한 사례의 계산법에 대한 실제 측정사례에 대해서(실험결과값 포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포장공간 비율방법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브랜드 가리고)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게되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이번교육에서 언급된 내용중 행정처분관하여 제조자 및 수입자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인 경우 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조자라는 의미는 어느 업자(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에 포함이 될까요?	과대포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질문이신가요? 그렇다면 문의하신 내용은 지자체 및 환경부에 질의한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1/다음 제품들은 포장방법 기준을 지켜야 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ex. 브러시, 스펀지, 거울, 뷰러, 타올, 우산 등 2/30ml 이하 단위제품 + 단위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매품이 한 상자에 포함되어 판매될 경우, 포장공간비율 10%미만을 지켜야할지 여쭙습니다.	제품포장규칙 [별표1] 비고1에 따라, 주제품+비매품(판매되지 않는 증정품)일 경우 단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물 30ml 이하의 단위제품 1개 + 비대상제품(비매품)으로 구성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적용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7	화장품을 고정하는 속케이스(예 : 바이알 고정하는 플라스틱)도 포장횟수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6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인 경우에 포장횟수로 산입됩니다. 제품의 형태를 명확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제품의 사진등을 첨부하시여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

18	포장재 재질구조 등록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주체입니다. - 주문자상표부착(OEM) 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제품의 상표권을 가진 판매사가 평가주체 - 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평가의무 면제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19	1. 합성수지 무색의 기준에서 반투명도 유색으로 분류되는지? 2. 캡 안쪽에 들어가는 발포형PE스티로폼을 일반PE로 봐도되는지? 3. 구조평가에서 HDPE, LDPE혼합재질의 경우 단일PE로 보는건지?	1. 무색의 용기에 부식공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경우 무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여 불투명하게 보이는 경우 유색으로 분류됩니다. 2. 잡자재가 EPE, EPP 등 발포합성수지라 하더라도 PE, PP로 분류하여 평가합니다. 3. HDPE와 LDPE는 원료가 동일한 PE이므로 PE 단일재질로 인정됩니다.
20	라벨이나 비닐류가 여러겹으로 되어 있을 때 접착제 성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하나요?	접착제는 재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	색코팅은 몸체에 직접인쇄인가요? 아니면 몸체 자체 색깔있음으로 분류되나요?	몸체에 정보(상호, 상표명 등)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문구 등을 인쇄하는 경우 "몸체에 직접 인쇄", 그렇지 않은 경우 몸체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색코팅은 몸체의 색상으로 간주하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22	매출액, 수입액, 출고량 기준이 제품의 가격, 제품의 무게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용되는 포장재만 해당하는건가요 ?	매출액과 수입액은 해당 기업의 연간 총 매출, 수입액을 말하며, 출고량은 출고되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3	종이+플라스틱필름이면 우유팩이 아니더라도 종이팩으로 분류되나요? (예. 삼푸가든 종이팩, 시트마스크가 든 종이+필름파우치)	종이에 플라스틱필름이 단면또는 양면으로 코팅,첩합된 경우 종이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4	평가를 안하고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기하는건 괜찮은건가요?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미평가시 과태료 대상
25	수입 화장품 왼재품의 경우 표쟁재 평가대상 해당됩니까? 감사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는 모두 평가대상입니다. 다만, 규모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가의무가 면제되며,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	이제 막 개업한 수입사입니다. 아직 매출이나 수입기준에 해당안되어 등급평가 대상업체가 아닌데 분리배출 표시는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는 부분인가요?	분리배출표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해당할 경우 면제기준에 관계없이 분리배출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는 면제사항이 없습니다.
27	EPR 면제 대상이라면 이를 업체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매출액, 출고량을 계산해서 증명 해야하는건가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은 없나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서 재활용의무면제대상일 경우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매년 4월 15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에 매출액 또는 출고량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수분크림 용기가 나선형으로 뚜껑을 잠그고 조금이라도 좁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페트병으로 분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좁아지는 부분 없이 일직선으로 원통모양으로 딱 떨어지면 페트병으로 분류할 수 없나요? 무엇으로 분류해야할까요? 그 좁아지는 부분이라는 게 뚜껑을 개봉했을 때, 뚜껑 결착하는 부분이 들어가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걸까요?	명확한 포장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품사진 등 명확한 포장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	쿠션 본품+리필 구성인 경우, 리필은 단독으로 재활용 평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평가 비대상인가요? 강의 중 제외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본품과 함께 별도의 리필제품이 제공되는 경우, 1)본품 포장재 2)리필제품 포장재를 나누어 각각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0	금박 인쇄에 대하여 유리병/패트병은 금속혼입라벨,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는 몸체인쇄로 평가하면 평가기준이 너무 다른거 아닌가요? 이번에 설명주신 금박인쇄 내용은 기존에 가이드라인에도 나와있지 않던 사항이라 신규로 추가된 기준으로 봐야할것 같은데, 기존에 박 인쇄를 몸체인쇄로 전부 평가한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유리병의 경우 "몸체에 직접 인쇄"에서 "금속 혼입재질"로 변경하는 경우 평가결과 등급이 변화합니다. (재활용 보통->재활용 어려움) 페트병의 경우 "몸체에 직접 인쇄"와 "금속 혼입재질" 모두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되어 평가결과 등급에 변화가 없습니다. 유리병 포장재 중 금박인쇄를 한 포장재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올바른 재질구조로 재평가하시기 바랍니다.
31	묽은 액체가 담긴 용기(토너제품류)에 토출을 위한 "팩킹"을 끼워서 유통되는 경우에, 용기에서 팩킹분리 시, 분리가 용이한지/안한지의 기준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분리 가능"으로 분류합니다.
32	펌프형태 페 트병은 분리되도 무조건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되는건지요	페트병 포장재에서, 금속스프링이 내장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펌프가 몸체와 분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합니다.
33	합성수지 필름시트류에 부착된 지퍼에 대해 평가할 때 1)지퍼백 파우치 내면에 붙은 지퍼(손으로 눌러서 잠그고, 손으로 벌려 바로 열 수 있는)는 굳이 잡자재로 평가 안해도 되고, 반면 금속으로 톱니형태 맞물리게 붙은 지퍼는 (의복류 등에 사용되는 형태) 잡자재로 평가하는 게 맞는 건가요?	1) 지퍼백 파우치 내면의 지퍼 부분은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테이프/이빨/슬라이더로 구성되어있는 형태의 지퍼는 잡자재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34	용기의 토출구에 체결하는 "팩킹"이 잡자재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팩킹에 포함된 알루미늄 씰링지는 분리해서 버리고 사용하게 되는데, 씰링지는 분리배출 등급평가에서 첩합에 해당되나요?	명확한 포장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품사진 등 명확한 포장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5	화장품으로 내용량 30ml 이하 제품이라 분리배출 표시를 생략하려는데, 평가결과 표시를 해야 하나요?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경우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6	규모가 작으면 재활용 평가 대상이 아니니 재활용 어려움 표시도 할 필요가없다는 거죠?	규모미만업체의 경우 평가의무 및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37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인쇄와 코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표면적이 넓은 인쇄가 코팅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나요?	몸체에 정보(상호, 상표명 등)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문구 등을 인쇄하는 경우 "몸체에 직접 인쇄", 그렇지 않은 경우 몸체 재질의 일부로 평가합니다.
38	ABS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라스틱 Other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나요?	재활용이 어려운 ABS 등 플라스틱 Other 포장재의 경우, 소각, 매립등의 과정을 거쳐 열에너지 등으로 재활용되게 됩니다.
39	분담금 계산시 포장재 출고량 계산 할때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종이튜브는 분리배출 표시 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이튜브의 포장재 량은 계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분담금은 포장재의 출고량(kg)*재활용의무율*분담금단가(원/kg)으로 산출됩니다. 종이튜브는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가 아니므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0	법령 제19조를 보면 분담금을 충실히 납부하는경우에는 부과금이 징수 안되는거 아닌가요??	분담금은 공제조합에서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시 재활용부과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1	출고수입실적제출은 화장품 제조사, 책임판매사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출고수입실적은 OEM, ODM 주문방식의 경우 주문자(상표권자)가 재활용의무주체입니다. 다만, OEM, ODM 주문방식으로 인한 제조자도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타사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	상표권을 갖고있는 주문자가 신고를 하는데 제조자는 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조자가 OEM주문 받는 제품별로 포장재 량을 다 계산해서 입력해야하나요?	OEM 주문방식으로 인한 제조자도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시 자사/타사구분에 타사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플라스틱과 비닐의 구분 두께가 0.25mm 기준이라고 하셨나요?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 비닐류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로 비닐류의 경우 두께 기준이 0.25mm 미만이면 필름형, 0.25mm 이상이면 시트형으로 구분합니다.
44	과태료 대상인 품목인 경우 한번만 과태료를 내면 되나요? 같은 품목에 대해서 중복 과태료가 발생 될 수 있나요?	과태료 기준은 환경부(또는 지자체)소관으로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45	PE튜브에 금박인쇄를 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인지요?	몸체에 정보(상호, 상표명 등)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문구 등을 인쇄하는 경우 "몸체에 직접 인쇄", 그렇지 않은 경우 몸체 재질의 일부로 평가합니다. 인쇄내용에 따라 재질·구조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및 분리배출표시 제도>

46	도포첩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별표]에 따르면, '도포첩합 등'이란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제외)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47	1. 종량제 배출 등의 규제 적용시 캡 박킹 등의 자재에도 기재하여야 하는가요? 2. 30ml이하의 *10ea 세트 제품의 경우, 포장 재질 등의 기재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요? 3. 선물포장등의 추가 포장은 포장 공간 등의 규제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용기인가요?	1.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다중포장재의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패킹 등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용기 표면에 용기에 대한 분리배출표시를 하시고 그 아래에 자재의 재질에 따라 "캡:종량제 배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내용물이 30ml이하인 경우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30ml이하인 각 제품은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이 제품 10개를 묶어 포장한 포장재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인 경우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선물포장을 제조/수입/판매자가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대상이 됩니다. 기존제품에 선물용포장을 한번 더 한다면 포장횟수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선물포장을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48	분리배출표기사항 및 재활용어려움표기 상세 설명 필요	1. 분리배출표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는 세부재질에 맞게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별표]에 따른 도안 작도 규정을 지켜 분리배출표시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iepr.or.kr)- 제도소개 -분리배출표시제도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활용어려움표기 : 평가결과가 "재활용 어려움"인 경우 표시기한(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등급표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등급표시 기한의 기준일은 포장이 완료된 제품의 제조일이며, 표시기한 내에는 등급표시 없이 사용 가능 - 기한 내 등급표시가 곤란한 경우, 표시기한이 도래하기 전 표시기한 연기 신청으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49	1. 분리배출표기 삼각형 아래에 PET대신 BIO PET가 기재되어있는 도안이 있는데, 그 도안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록/신고/인증 등이 필요한 지? 업체 확인 & 자체 판단에 의하여 기재해도 되는 경우라면, BIO PET 100% 사용 시 기재할 수 있는 지? 기준 함량이 있는 지?	바이오 페트 도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바이오매스 등 관련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도안은 권고사항으로 물성이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할 경우 플라스틱 PET 도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50	예를들어 일반 PET 70% + BIO PET 30%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바이오매스 등 관련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 바이오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	2. BIO PET에 대한 내용을 패키지에 마케팅 문구로 소구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구할 수 있을 지? (BIO PET GRS 인증서, 사탕수수 유래 자료, 함량 30% 자료 있음) 환경을 생각한 식물유래 원료 30%를 함유한 BIO PET로 제작된 상자입니다.	분리배출표시 외 기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만, 해당문구로 인하여 분리배출표시 크기, 표시위치 등의 규정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2	우리나라 제조의 화장품인데, 포장재에 해외 분리배출 마크를 표시해도되나요?	국내에서 제조되어 수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는 분리배출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3	pet용기(투명)에 무색의 무광코팅을 적용하면 도포/첩합 마크를 사용해야하는지요	무광코팅의 재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광코팅의 재질이 합성수지가 아닌 타재질이며,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광코팅의 재질이 합성수지일 경우에는 투명페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54	아까 금박인쇄관련해서, 분리배출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 도포첩합인가여? 아닌가여?	해당 금박인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에 부착된 금박인쇄의 경우 도포첩합에 해당됩니다.
55	몸체가 유리, 뚜껑이 내/외캡 분리 불가능한 이중캡인데 내캡이 합성수지, 외캡이 메탈인 경우 뚜껑:other인지 뚜껑:종량제배출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분리불가능한 캡 구조에 해당할 경우 유리병 분리배출표시 도안 아래에 뚜껑 : 종량제 배출의 다중포장재 규정을 참고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56	pet용기(투명)에 무색의 무광코팅을 적용하면 도포/첩합 마크를 사용해야하는지요	무광코팅의 재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광코팅의 재질이 합성수지가 아닌 타재질이며,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광코팅의 재질이 합성수지일 경우에는 투명페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57	묽은 액체가 담긴 용기(토너제품류)에 토출을 위한 "팩킹"을 끼워서 유통되는 경우에, 용기에서 팩킹분리 시, 분리가 용이한지/안한지의 기준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분리 가능"으로 분류합니다.
58	아까 금박인쇄관련해서, 분리배출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 도포첩합인가요? 아닌가요?	해당 금박인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에 부착된 금박인쇄의 경우 도포첩합에 해당됩니다.
59	분리배출 일괄표시의 경우 법규에는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분리배출 마크로부터 어느정도의 위치 범위까지 표시 가능한가요? 대각선 등의 위치도 괜찮은가요?	일괄표시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의 인접한 곳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크기, 위치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각선 등의 위치에 대해서는 표시예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60	화장품을 전량 수출한다면 분리배출마크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되나요?	국내에서 제조되어 수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는 분리배출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61	플라스틱 재질의 튜브에 알루미늄재질이 혼합되면 도포첩합 마크를 써야 하는건가요?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트레이류에 금속재질이 혼합될 경우 도포첩합에 해당됩니다. 도포첩합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62	분리배출 표시도안중 무색페트의 경우 먹는샘물류에만 사용가능하고, 화장품에는 사용불가아닌가요?	현행 지침상 무색의 PET재질 포장재는 내용물이 화장품이라도 "무색페트" 도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예고(시행 확정 전)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제품을 담은 투명페트병의 경우 "무색페트"가 아닌 "플라스틱:PET"로 표기하도록 개정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3	1. 분리배출표기 삼각형 아래에 PET대신 BIO PET가 기재되어있는 도안이 있는데, 그 도안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등록/신고/인증 등이 필요한 지? 업체 확인 & 자체 판단에 의하여 기재해도 되는 경우라면, BIO PET 100% 사용 시 기재할 수 있는 지? 기준 함량이 있는 지?	바이오 페트 도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바이오매스 등 관련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도안은 권고사항으로 물성이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할 경우 플라스틱 PET 도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64	2. BIO PET에 대한 내용을 패키지에 마케팅 문구로 소구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구할 수 있을 지? (BIO PET GRS 인증서, 사탕수수 유래 자료, 함량 30% 자료 있음) 환경을 생각한 식물유래 원료 30%를 함유한 BIO PET로 제작된 상자입니다.	분리배출표시 외 기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라며, 다만, 해당문구로 인하여 분리배출표시 크기, 표시위치 등의 규정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65	도포.첩합 등 표시관련하여 예를들어 마스크팩 파우치에 금박이 들어간다면 도포.첩합 표시를 해야하는건가요?	마스크팩 파우치의 재질이 합성수지이고, 타소재가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도포첩합되어 있을 경우 분리배출표시지침 [별표]에 따라 도포첩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66	도포첩합에 대해 질문 두가지 드립니다. 1. 팩트 제품과 같이 합성수지 몸통에 거울, 경첩 등의 타재질이 부착되어있을 경우, 소비자가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도포, 첩합에 해당되나요? 2. 합성수지 용기에 풀코팅을 하게 되면 이는 도포 첩합에 해당하나요? 풀코팅에 사용하는 소재를 확인해야 할까요?	1. 페트 제품에 타재질이 부착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에 해당할 경우 도포 첩합에 해당합니다. 2. 코팅재질에 대한 정확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코팅재질이 합성수지가 아닌 타소재재질일 경우 도포첩합에 해당합니다. 만약 코팅재질이 합성수지에 해당한다면, 용기의 재질에 맞는 분리배출 도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7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는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한다는 개정안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접수기간이 끝났으며, 규제심사 중입니다.
68	현재 분리배출표기제도 계도기간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의무기간인가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대상 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출시된 제품 포장재의 경우 재고소진 및 동판교체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69	향수(몸통:유리, 펌프:플라스틱other+스프링,뚜껑 플라스틱other)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분리배출표시 어떻게해야하나요? "몸통 유리(삼각형안에 유리표시), 펌프, 뚜껑: 종량재배출"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할까요? "몸통 유리(삼각형안에 유리표시), 펌프, 뚜껑 other"라고 표시하면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나요?	해당 제품에 대한 사진등이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분리배출 표시는 부분품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뚜껑, 펌프의 크기 및 구조상 분리배출표기가 어려울 경우, 주요 재질(유리) 도안 아래에 일괄표시(펌프 : other, 뚜껑: 플라스틱) 하시기 바랍니다.
70	무색페트 도안의 경우 내용물에 따라 해당 재질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행정예고(시행 확정 전)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제품을 담은 투명페트병의 경우 "무색페트"가 아닌 "플라스틱:PET"로 표기하도록 개정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그램 이하일때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는것에대한 내용은 화장품에도 포함되는 사항 맞나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72	내용물의 용량이라는 것은 용기를 제외하고 크림, 액 등 화장품 내용량을 말하는 게 맞는거죠? 예로 10ml 앰플이 5개 들어 있는 박스 포장의 제품인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의 내용물인 액제가 10ml이기 때문에 분리배출표시 예외적용을 받는 거죠?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다면 트레이도 예외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트레이에 대해서는 표시해야 하나요?	내용물의 용량이 10ml인 앰플 각각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이 앰플 다섯개를 포장한 플라스틱 트레이는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하가 아니라면 분리배출 표시 대상으로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3	10g이하의 카트리지를 바꿔끼는 형태의 방향제인 경우, 내용물은 방향제의 액제만인건지요? 액제에 카트리지를 포함한 무게를 내용물로 보는 건가요?	포장재의 구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카트리지의 내용물은 10g 이하이며, 이를 포장한 다른 포장재가 있는 경우, 내용물은 카트리지의 무게와 내용물의 무게를 합친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74	앰플 바이알 에서 뚜껑인 캡 부분이 알루미늄+PP로 이루어진 경우, 유리도안에서 분리배출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리 분리배출도안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아래에 뚜껑 : other로 일괄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5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알루미늄 라미네이트 튜브 관련 설명 중에 알루미늄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도포첩합인가요?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트레이류에 금속재질이 혼합될 경우 두께와 관계없이 도포첩합에 해당됩니다. 도포첩합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76	헤어제품중, 두피부위에 바르는 제품으로, 본체에 구슬이있는 경우라 본체와 분리되지 않으나, 뚜껑은 분리가 되는 경우 따로 뚜껑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도 진행해야하나요?	해당 포장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나, 분리배출표시지침에 따라 각 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뚜껑에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지침 제6조 참조) 본체 표시 도안 아래에 뚜껑에 대한 일괄표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7	1. 분리배출 일괄표시의 경우 법규에는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분리배출 마크로부터 어느정도의 위치 범위까지 표시 가능한가요? 대각선 등의 위치도 괜찮은가요? 2. 화장품으로 내용량 30ml 이하 제품이라 분리배출 표시를 생략하려는데, 평가결과 표시를 해야 하나요?	1. 일괄표시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의 인접한 곳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크기, 위치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각선 등의 위치에 대해서는 표시예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78	향수의 경우 대부분 유리용기부분과 펌프(금속, 플라스틱 복합)가 분리되지 않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도포·첩합 등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마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환경부고시 제2021-140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별표]에 따르면,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제외)입니다. 따라서 '유리병'은 도포·첩합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리" 도안을 사용하시고 "펌프:other" 로 일괄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9	페트 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에 무광 코팅, 컬러 코팅이나 인쇄, 증착을 할 경우에 도포 첩합 도안 표기해야할 까요?	무광 코팅, 컬러 코팅, 인쇄 증착시 해당 재질이 타소재(금속, 생분해성플라스틱 등)에 해당할 경우 도포첩합에 표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재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합성수지 재질 용기에 종이 재질이 전면 부착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성수지 재질 용기·트레이류에 종이를 증착한 경우 합성수지 재질 몸체에 대해서만 "플라스틱" 도안을 사용하여 분리배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